

이 자료는 **즉시**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배포일 | 2018년 7월 31일(화) (총 1쪽) | 담당부서 |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|
| | | 담당자 | 김경례 팀 장 (02-3460-3061) 이희경 변호사 (02-3460-3064) 김미경 과 장 (02-3460-3085) |

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,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

- 2018. 8. 1. ~ 8. 14. 참가신청 접수 -

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는 7월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.

사건 개요

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. 5.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,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.

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‘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’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,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「소비자기본법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(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)했다.

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 까지 관련 서류(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, 신분증 사본,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위임장)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(www.kca.go.kr)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(문의전화 ☎02-3460-3068, 3074)할 수 있다.